

부가통신사업 신고 제도 안내

□ 신고대상 및 법적근거(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)

-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
 -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·데이터·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(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-23호)로 인터넷 등을 통한 포털, 온라인쇼핑, 게임, SNS, 인터넷금융 등이 해당
 - 신고 없이 사업을 경영한 자는 시정명령, 역무제공 중지, 징역(2년 이하) 또는 벌금(1억원 이하) 대상(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및 제96조)

□ 신고면제(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4항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)

-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
 - 다만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

□ 구비서류

- 부가통신사업신고서
- 통신망구성도(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)
-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내역서(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)

□ 신고 방법 안내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(www.ems.it.go.kr) : 전자민원센터<전자민원신청 <민원신청<통신사업 선택<부가통신사업 신고 신청
- 우편/팩스 : 지역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또는 이용자보호과
- ※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기관명	관할지역	소재지	전화번호
서울전파관리소	서울, 인천, 경기	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-43	02-2680-1757
부산전파관리소	부산, 경남	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-17	051-974-5119
광주전파관리소	전남, 광주	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-24	061-330-6811
강릉전파관리소	강원	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-31	033-660-2972
대전전파관리소	충남, 대전, 세종	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	042-520-4136
대구전파관리소	경북, 대구	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	053-749-2817
전주전파관리소	전북	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	063-260-0109
울산전파관리소	울산	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	052-231-8885
청주전파관리소	충북, 청주	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	043-261-5855
제주전파관리소	제주	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	064-740-2817